ĐIỀU ƯỚC QUỐC TẾ

Thông báo số 19/2022/TB-LPQT ngày 18 tháng 5 năm 2022 về việc điều ước quốc tế có hiệu lực: "Công hàm trao đổi sửa đổi Quy tắc cụ thể mặt hàng quy định tại Phụ lục 3-A của Hiệp định Thương mại tự do giữ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à Chính phủ nước Đại Hàn Dân Quốc"

(Tiếp theo Công báo số 419 + 420)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4.44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2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 ·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3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슬립 · 페티코트(petticoat) · 브리프(brief) · 팬티 · 나이트드레스 · 파자마 · 네그리제(negligee) · 목욕용 가운 ·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		의류(제 5602 호 · 제 5603 호 · 제 5903 호 · 제 5906 호 ·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0.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수영복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		손수건	
		621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6		장갑류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216.00	-장갑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2		베드린넨(bed linen) · 테이블린넨(table linen) · 토일렛린넨(toilet linen) ·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2.5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2.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3.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2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6		방수포(tarpaulin)ㆍ차양ㆍ차일, 텐트, 돛[보트용ㆍ세일보드(sailboard)용ㆍ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방수포(tarpaulin)ㆍ천막ㆍ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ㆍ접시닦이포ㆍ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307.2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308.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완전생산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선별한 것	완전생산기준
		63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12 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 64 류-제 67 류)				
64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 · 리베팅(riveting) · 네일링(nailing) · 스크루잉(screwing) · 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류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 플라스틱 · 가죽 ·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 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65.04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 · 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 · 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506.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506.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7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6507.00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			제 66 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2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2.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603.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			제 67 류 조제 깃털 · 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과 그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		인조 꽃 · 잎 ·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 · 잎 ·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3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7.04		가발 · 가수염 · 눈썹 · 속눈썹 · 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 · 동물의 털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3 부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 68 류-제 70 류)				
68			제 68 류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1.00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		가공한 석비용 ·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10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석비용 ·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802.9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 · 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 · 방음용 ·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8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8.00	-패널 · 보드 · 타일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 · 짚 · 목재의 대팻밥 · 칩 · 파티클(particle) · 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보드 ·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6809.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		시멘트 제품 · 콘크리트 제품 ·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일 · 판석 · 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82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와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812.91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2	--종이 · 표지용 판지 · 펠트(fel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815.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1.00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20	-알루미나 · 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2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6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소호 제 6907.30 호 및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2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0.5 초과 100 분의 10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23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 분의 10 초과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30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 6907.4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07.40	-피니싱 세라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 · 세면대 · 세면대용 받침 · 목욕통 · 비데 · 수세식 변기통 · 수세식 변기용 물통 ·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1.00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管)	
		7002.31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 · 반사층 ·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6		제 7003 호 · 제 7004 호 ·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6.00	-제 7003 호 · 제 7004 호 ·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 · 가장자리 가공한 것 · 조각한 것 · 구멍을 뚫은 것 · 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 · 항공기 · 우주선 ·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0.20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		유리제품(식탁용 · 주방용 · 화장실용 · 사무용 · 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 · 구부린 것 · 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 · 슬래브 · 벽돌 · 스퀘어(square) · 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 · 패널(panel) · 플레이트(plate) · 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		실험실용 · 위생용 ·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 · 모조 진주 · 모조 귀석과 반귀석 ·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20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	
			-슬리버(sli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4 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 71 류)				
71			제 71 류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양식진주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7101.22	--가공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업용	
		7102.2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 · 사파이어 ·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 ·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10	-압전기용 석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20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 ·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92	--반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20	-화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티늄(platinum)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팔라듐(palladium)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로듐(rhodium)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ㆍ은ㆍ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ㆍ은ㆍ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72			제 72 류 철강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5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		합금철(ferro-alloy)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8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4.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루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7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40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틀니 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7.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4.10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2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26.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튜빙 · 드릴파이프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30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40	-비계(飛階) · 차단기 · 지주 · 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 ·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20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7314.41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체인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7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물결 모양 못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 · 압정 · 제도용 핀 · 물결 모양 못 · 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나선가공한 제품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 · 수편침 · 돗바늘 · 코바늘 · 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1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325.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7401.00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		구리의 선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7)	품목명	적용 가능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2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		구리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 - 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Xem tiếp Công báo số 423 + 424)

VĂN PHÒNG CHÍNH PHỦ XUẤT BẢN

Địa chỉ:	Số 1, Hoàng Hoa Thám, Ba Đình, Hà Nội
Điện thoại liên hệ:	
- Nội dung:	080.44417; Fax: 080.44517
- Phát hành:	080.48543
Email:	congbao@chinhphu.vn
Website:	http://congbao.chinhphu.vn
In tại:	Xí nghiệp Bản đồ 1- Bộ Quốc phòng